

의안번호	2207527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5.01.21.
추 계 번호	25E037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95억원(연평균 3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71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4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32	-32	-32	-95	-32
- 국세(74.7%)	-24	-24	-24	-71	-24
- 지방소비세(25.3%)	-8	-8	-8	-24	-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2항제9호	○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·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2항제9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농민 등이 직수입하는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
-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19년 36억원, 2022년 46억원, 2024년(전망) 2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, 최근(2019~2024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32억원 수준

[표 2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 2019~2024년(전망)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(전망)	연평균
조세지출액	36	21	34	46	24	29	32
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~2028년 3년 간 총 95억원(연평균 3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(2019~2024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(32억원)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
 - 2026~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71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4억원 감소 예상

[표 3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8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32	-32	-32	-95	-32
- 국세(74.7%)	-24	-24	-24	-71	-24
- 지방소비세(25.3%)	-8	-8	-8	-24	-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